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7.

발 의 자 : 김은혜 · 서천호 · 정성국
김미애 · 김기현 · 고동진
박정훈 · 박수민 · 조승환
김선교 · 이종욱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%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한해 적용하고 있음.

20%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,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,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“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”를 “맥주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세율)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.	제8조(세율) ①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발효주류: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	2. ----- -----
가. · 나. (생 략)	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맥주: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. 다만,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<u>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</u>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, 100원 미만은 버린다.	다. ----- -----. ----- ----- -- <u>맥주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